#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117 발의연월일: 2023. 2. 20.

발 의 자:김윤덕・김정호・정성호

윤재갑 • 박상혁 • 조오섭

이정문 • 윤후덕 • 홍익표

김병욱 · 강훈식 · 김승남

안호영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,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 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,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에 따른 '독서소외인'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,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, 독서소 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독서 문 화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'독서동아리'를 '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'으로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,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 도록 함(안 제13조).

법률 제 호

#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건전한"을 "건강한"으로, "교육의"를 "학습의"로, "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"을 "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"로 한다.

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"독서동아리"란 다수의 사람이 모여 독서 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"를 "제1항에 따른 평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에"로 한다.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수립하여 시행"을 "수립ㆍ시행"으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"진흥"을 각각 "문화 진흥"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"진흥"을 "문화 진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

"독서 모임"을 "독서동아리"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"진흥"을 "문화 진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독서 모임을"을 "독서동아리를"로, "그 모임의"를 "독서동아리의"로 한다.

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4장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(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1. 독서소외인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
  - 2.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
  - 3.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  - 4.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연구 및 통계 작성
- 5.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서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조(목적)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제1조(목적) ------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 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 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 -----건강한-----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 -----학습의-----으로써,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 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-----평등한 독서 문화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 활동 기회를-----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•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"독서동아리"란 다수의 사람 <신 설> 이 모여 독서 자료를 함께 읽 고 토론하는 모임을 말한다. 3. • 4. (생략) 4. •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<신 설>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 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 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

| $\bigcirc$ | (생  | 략) |
|------------|-----|----|
| <u> </u>   | \ 0 | 1/ |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제1</u> 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)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
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
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
계획(이하 "기본 계획"이라 한
다)을 5년마다 <u>수립하여 시행</u>
하여야 한다.

#### ② ~ ④ (생 략)

제8조(독서 교육 기회 제공)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 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.

제9조(지역의 독서 <u>진흥</u>)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<u>진</u> 홍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

|   | <u>야 한다.</u>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| <u>②</u> (현행 제1항과 같음) |
|   | ③ <u>利1</u>           |
|   | 항에 따른 평등한 독서 문화       |
|   | 활동 기회 보장 및 제2항에 따     |
|   | 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<u>.</u>              |
| 제 | 5조(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)    |
|   | ①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수립·시행-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|
|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| 제9조(지역의 | 독서       | 문화 | <u>진흥</u> ) | 1 |
|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|
|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|
|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|
|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|
| - 무하 지그 | <u>ਣ</u> |    |             |   |

를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 (생략)
- 제10조(학교의 독서 <u>진흥</u>) ①·② (생 략)
  -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<u>독서 모임</u> 의 운영 장려, 학교 도서관의 설치·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 다.
  - ④·⑤ (생 략)
- 제11조(직장의 독서 <u>진흥</u>) ① (생략)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<u>독서 모임을</u>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, <u>그 모임의</u>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.

<신 설>

| ᆀ        | <ul><li>② (현행과 같음)</li><li>10조(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)</li></ul> |
|----------|--|
| <u> </u> | 10도(학교기 학자 <u>단화 전등</u> )<br>①·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|
|          | ③  |
|          | <u>독서동아</u>  |
|          | 리  |
|          |  |
|          |  |
|          |  |
|          | <ul><li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       | 11조(직장의 독서 <u>문화 진흥</u>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① (현행과 같음)   |
|          | ②  |
|          |  |
|          | 독서동아리를-  |
|          | <u>독서</u>  |
|          | <u>동아리의</u>  |
|          |  |
| <u>제</u> | 13조(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 |
|          |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  |
|          | 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|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  |
|          | 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  |

제13조(관계기관과의 협력) (생 제14조(관계기관과의 협력) (현행 략)

(생 략)

제15조(연차 보고) (생 략)

<신 설>

-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할 수 있다.
- 1. 독서소외인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
- 2.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 용할 수 있는 독서자료와 시 설의 확충 및 제공
- 3.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4.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연 구 및 통계 작성
- 5.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
- 제13조와 같음)
- 제14조(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) 제15조(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) (현행 제14조와 같음)
  - 제16조(연차 보고) (현행 제15조 와 같음)
  - 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 서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